

편집자 주 -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경기지사 무상급식 반대 보도 관련 조정신청 (반론보도 합의)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2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문 수
피신청인 : 매일경제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7.
처리결과 : 조정성립

김문수 경기지사는 매일경제신문이 기자칼럼 형식의 기사를 통해 교육감이 추진하려던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이 '김 지사의 반대 속'에 경기도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보도하자, 해당 기사는 김 지사가 주도적으로 무상급식에 반대했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피신청인 신문사는 이에 대해 김 지사가 그 동안 무상급식에 반대 의견을 일관되게 취해왔고, 기사의 내용도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협력을 잘 하라는 취지이므로 조정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문사는 일부 독자들이 오해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인정,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에 합의했다.

보도내용

매일경제 : 『거버넌스 정신 잃은 경기도』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0일자)

내 용 : 지난 2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인구가 573명에 불과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레위스런시의 시장과 의장 이야기를 다뤘다.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87세 죽마고우가 56년 동안 시장과 의장으로 시 정책에서만큼은 한마음으로 일했다는 내용이다. 시장은 공화당원, 의장은 민주당원이지만 시를 위해서는 정치적 색깔을 버리고 시민을 위해 봉사해 왔다는 얘기다.

이를 보고 있자니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관계가 안타깝다. 둘은 죽마고우는 아니지만 서울대 1년 선·후배 사이로 재학 중 후진국사회연구회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나라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던 수어지교였다.

시간이 흐른 뒤 김 지사는 보수세력을 대표하는 한나라당 당원으로 노선을 바꿨고, 김 교육감은 소속당은 없지만 진보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미묘하게도 이 두 사람은 올해 경기도 교육과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다시 만났다. 세월이 갈라놓은 서로 다른 정치적 신념, 그러나 경기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한울타리는 레위스런의 두 죽마

고우를 닮았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결론은 다르게 흐른다.

요즘 두 기관은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다름없다. 김 교육감이 추진하려던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김 지사의 반대 속에 경기도의회의 반대로 무산됐고, 김 지사는 경기도에 교육국 설치 조례를 만들어 도교육청으로부터 기관소송을 당했다. 모두 위민(爲民)이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미 지방의회는 정당별로 갈라졌고, 행정공무원은 교육공무원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도리어 도민이 두 기관을 화해시켜야 할 처지가 됐다.

민선 4기 들어 경기도는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교육분야라고 예외는 아닐 것이다. 거버넌스 정신이 공허하진 않았는지 되새겨 볼 때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거버넌스 정신 잃은 경기도

2. 내용: 매일경제는 지난 11월10일자 오피니언면에 “거버넌스 정신 잃은 경기도”라는 제목으로 “김 교육감이 추진하려던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김 지사의 반대 속에 경기도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 확인한 결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의 무상급식 반대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합의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알려왔습니다

나. 내용: 본지가 지난 11월 10일자 38면 ‘기자24시’란 『거버넌스 정신 잃은 경기도』 제하의 기사에서 “김 교육감이 추진하려던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김 지사의 반대 속에 경기도의회의 반대로 무산됐고”라고 보도한 데 대해 김 지사는, 예산삭감 결정은 경기도의회의 고유 권한으로서 도지사가 개입할 수 없는 사안이며, 실제로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삭감 결정은 경기도의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12월 15일자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매일경제> 38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매일경제>의 통상적인 <알려졌습니다>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노컷뉴스: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5일자)

내 용: <합의사항 참조>

이은재 의원 허위 보도자료 배포 보도 관련 조정신청 (반론보도 합의)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4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은 재

피신청인 : 노컷뉴스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7.

처리결과 : 조정성립

이은재 의원은 노컷뉴스가 자신이 '언론에 보도되기 위해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보도하자, 해당 기사가 악의적인 인신공격을 통하여 자신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국회의원으로 묘사한 것은 명백한 오보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피신청인 언론사는 이 의원 의원실이 언론사의 주목을 받기 위해 지자체장 집무실의 면적을 의도적으로 부풀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관련 자료는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했다.

보도내용

노컷뉴스 : 『씹쓸한 '국감 한 건 주의' ... 누가 누구를 감사해야 하나』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9일자)

내 용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9일 소방방재청과 중앙 119 구조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의 활약상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기자들은 이 의원이 낸 보도 자료를 기사화 할 때는 아주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전날 서울시 국감에 앞서 이 의원실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구청장 집무실 표준 면적을 준수한 곳은 송파구와 서초구 등 단 2곳에 불과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특히 강남구청장의 집무실은 표준 면적을 크게 초과해 교실 평균 면적의 3.56배에 이르는 235㎡(71평)이 넘고 성북구와 노원구의 구청장 집무실 면적도 200㎡를 넘는다고 밝혔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 시민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지만 강남구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발끈하고 나섰다. 현재 강남구청장실 면적은 비서실을 포함해 127.9㎡로 서울시 25개구 중 19번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노원구청도 구청장 집무실 면적이 200㎡가 넘는 것으로 보도됐으나 실제로는 136.7평방미터라며 다른 의원들의 요구 때도 똑같은 자료를 제출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황당해 했다. 성북구청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결국은 이은재 의원실에서 기사 한 줄 나오도록 하기 위해 잘못된 자료를 의도적으로 냈던가, 작업중에 착오를 일으켰다는 얘기다.

국정감사 자료 제출 준비하라, 제출된 이후에는 잘못된 의원실 보도자료 바로 잡으라... 국정 시즌에 바쁜 공무원들이 서울시 각 구청의 직원들만은 아닐 것이다.

◆ 이은재 의원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이은재 의원은 누구인가?

강남에 다가구 주택과 빌딩 등 43억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교수직을 휴직하고 비례대표 의원직

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폴리페서’ 다.

용산 참사 철거민들에 대해 “때만 쓰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심리가 깔려 있다”는 비하 발언을 했었고, 노 전 대통령의 봉사 사저를 ‘노방궁’이라고 저주를 퍼부어 민주당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꼭 1년 전에 있었던 경찰청 상대 국정감사 때는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당시 어청수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 도중 증인의 증언을 방해하고 답변을 제지해 윤리특위에 징계안 접수되기도 했다.

누가 누구를 감사해야 하는 건지, 이쯤 되면 헛갈릴 수밖에 없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 목 : “썩썩한 ‘국감 한건주의’… 누가 누구를 감사해야 하나” 정정보도문

2. 내 용 : 노컷뉴스는 지난 10월 9일자 「안성용기자의 포인트 뉴스」에 “썩썩한 ‘국감 한건주의’… 누가 누구를 감사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발표한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보도하는 한편 개인 신상에 대한 인신공격성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강남구청에 확인한 결과 행정안전부가 이은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법령상의 미비로 인하여 행정안전부와 강남구청 간에 발생한 문제로서 이은재 의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이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알려드립니다.

나. 내 용 : 노컷뉴스는 지난 10월 9일자 「포인트 뉴스」에 “썩썩한 ‘국감 한건주의’… 누가 누구를 감사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발표한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강남구청에 확인한 결과 이은재 의원의 보도자료는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 이은재 의원실에서 작업중의 착오 등의 잘못을 범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알려드립니다.

2. 피신청인은 2010년 1월 15일까지 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썩썩한 ‘국감 한건주의’… 누가 누구를 감사해야 하나”)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2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노컷뉴스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9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정부 투자를 받은 벤처기업 사장의 성접대 의혹 보도 관련 조정신청 (반론보도 합의)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5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하 ○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0.

처리결과 : 조정성립

게임 개발업체 대표인 하 모 씨는 중앙일보가 회사의 전직 감사 박 모 씨의 주장을 근거로 자신이 공무원과 대기업 임원 등에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보도하자,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하 씨는 게임 개발업체의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접대한 사실은 있으나, 신문이 보도한 것처럼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투자회사)에 정부의 펀드 투자를 받아내기 위해 공무원 등에 성접대를 한 것으로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하 씨는 또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한 접대도 사적인 문제로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피신청인 신문사는 관련 사건이 현재 진정서가 접수되어 수사 중에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정정 또는 반론 보도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으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 반론보도를 하기로 합의했다.

보도 내용

중앙일보 : 『정부 투자 받은 벤처기업 검찰서 성접대 의혹 조사』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6일자)

내 용 : 검찰이 벤처기업 대표가 공무원 등에게 성접대를 한 뒤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리스트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리스트에는 전·현직 공무원 5명과 현직 교수 한 명, 기업체 임직원 15명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 일본 기업인도 한 명 있다.

공무원은 중소기업청,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서울시, 서울시내 모구청 소속이다. 대기업 임직원은 3명이고 정보통신 및 게임 벤처 대표가 9명이다.

리스트는 게임 개발업체인 A사 대표 H씨(47)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리스트는 2006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접대한 사람과 접대 날짜·장소, 성접대한 여성의 이름 등을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기록돼 있다. 파일 이름은 ‘나이트 리포트(night report)’, ‘밤의 보고서’란 의미다. 여기에는 성접대 여성이 상대방 남자와의 성행위 시간·스타일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리스트는 이 회사의 전 감사 P씨(50)가 올해 초 서울 강남의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H씨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

P씨는 4일 밤 본지 기자와 만나 “성접대 여성은 ‘마타’라는 항목으로, 상대 남은 M으로 표기돼 있다. 마타하리와 MAN의 약어”라고 말했다. 그는 “리스트는 H씨가 성접대 여성 36명에게 보고를 받아 만든 것”이라며 “펀드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각계각층 인사를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벌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P씨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7일 P씨를 불러 리스트의 진위 등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P씨는 “A사에는 주주 40여 명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모두 30여억 원이 몰려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H씨가 올해 7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펀드자금 110억 원을 지원받은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리스트에 등장하는 공무원과 기업인들은 성접대 의혹을 부인했다. 리스트에 오른 중기청 직원은 “성접대는 금시초문”이라며 “H씨가 사무실로 찾아와 차를 마신 적은 있지만 바빠서 술자리는 못 했다”고 말했다.

2003년 10월 A사 대표가 된 H씨는 2006년부터 펀드 조성을 추진했다. 2007년 문광부의 문화산업자금을 중소기업청 산하 한국벤처투자가 심사해 지원하는 모태펀드를 받기 위해 신청서를 냈다.

게임펀드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560억 원대였다. 글로벌 디지털 콘텐츠 거래시장을 구축하는 데 출자하겠다는 명목이었다. 이는 업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선정 자체가 보류됐다.

2008년 다시 신청해 H씨는 모태펀드 160억 원의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으나 나머지 400억 원을 조성하지 못해 다시 무산됐다.

H씨는 2008년 말 창업투자회사를 차린 뒤 이 회사 명의로 재신청했고 올 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난 7월 110억 원을 지원받았다. 8월엔 한국책은행과 민간기업에서 165억 원을 투자해 펀드 규모는 275억 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졌다. 중기청 내규상 추가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 이듬해 재신청할 수 없는데 펀드매니저를 교체하는 편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한편 H씨의 컴퓨터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P씨에 대한 재판이 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H씨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H씨는 5일 본지와 통화에서 ‘그런 리스트를 작성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런 리스트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작성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또 “P씨가 원본 파일을 수정한 것도 나왔고 갖고 있는 게 뭔지도 모른다”고 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 목 : “정부투자 받은 벤처기업 검찰서 성접대 의혹 조사” 바로 잡습니다.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2월 6일자 사회면 1면에 “정부 투자 받은 벤처기업 검찰서 성접대 의혹 조사”라는 제목으로, 사회면 4, 5면에 “사이 틀어진 대표-감사, 사기·폭행 등 쌍방 고소만 6건”이라는 제목으로, 벤처

기업 대표인 H씨가 공무원 리스트를 작성하였고, 이 리스트를 입수한 검찰이 곧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H씨가 정부로부터 모태펀드 자금을 지원받은 배경에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H씨 및 관련 기관에 확인한 결과, 위 보도 기사 게재 당시 검찰에 진정서가 접수되지도 않았고 검찰이 성접대 리스트를 수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H씨는 본 신문이 인용한 성접대 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공무원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한 사실도 없으며, 위 리스트와 정부의 펀드자금 지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사로 인해 H씨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초래하였으며 앞으로의 사업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덧붙여 H씨를 전직 공무원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공무원 사회의 사기와 명예를 손상시켰으며, 이 기사로 인해 피해는 물론 의혹을 받았을 전·현직 공무원 및 관련 부처의 명예를 손상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리는 바이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좀 더 정확하고 세심한 기사 게재를 위해 노력을 할 것임을 알립니다. 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합니다.

합의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바로잡습니다

나. 내용 : 본지는 12월 6일자 1면 '정부 투자 받은 벤처기업 검찰서 성접대 의혹 조사' 및 4,5면 관련 기사에서 벤처기업 대표인 H씨가 성접대 리스트를 작성했고 정부로부터 모태펀드 자금을 지원받은 배경에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 게재 당시에는 검찰에 진정서가 접수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검찰에서 H씨가 성접대를 하거나 그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또한 H씨가 운영하던 게임회사와 중기청의 투자를 받은 펀드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12월 20일까지 <중앙SUNDAY>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중앙SUNDAY의 통상적인 정정보도문 제목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그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3. 피신청인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본 건 조정대상기사가 삭제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에 협조 요청을 한다.

4. 피신청인이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5. 향후 신청인이 성접대 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협의하여 정정보도를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앙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보도 (2009년 12월 20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방과후 학교 강사 불법 알선 보도 관련 조정신청 (반론보도 합의)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7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시단법인 한국방과후교육연합회

회 장 한 ○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KBS-1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6.

처리결과 : 조정성립

한국방과후교육연합회는 KBS-1TV가 「취재파일 4321」 프로그램을 통해 방과후 학교 강사 채용에 불법 알선업체들이 끼어들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자신 연합회 사례를 내보내자 정정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한국방과후교육연합회는 학교와 방과후 교사를 연결해 주면서 학교장과 강사 개인 간의 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이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자신 연합회가 강사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인상을 주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 언론사는 이에 대해 보도 내용은 신청인 연합회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가 존재하는 등 사실 확인 작업을 거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은 연합회는 일부 지회의 파행적인 운영을 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해당 보도는 연합회 전체가 강사를 송출하는 업체로 오인할 수 있게 한 점을 인정, 반론보도를 방송하기로 합의했다.

보도 내용

KBS-1TV : 「취재파일 4321」 프로그램 『방과후 강사는 봉』 제하의 보도 (2009년 12월 6일 21시 40분)

내 용 : ▷앵커 멘트 : 방과후학교 강사를 일선 학교에 알선해 주는 사설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강사들의 월급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많게는 월급의 절반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가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여다 봤습니다. (중략)

사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학부모들에게 방과후학교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선희(학부모) : “일단 학원에 다니면 셔틀버스 타고 다니면서 많은 위험도 있는데 학교 내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그러나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에 불법 알선업체들이 끼어들면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미정(가명) 씨는 지난 해 8월 방과후교육 관련 모 연합회의 소개로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방과후학교 강사로 채용됐습니다. 학교장과 강사 개인 간의 1:1 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따라 강사 채용 당시 계약서는 김 씨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연합회 측과는 별도로 구두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김미정(가명)(방과후학교 강사) : “제 명의로 된 통장을 그 쪽에 제출을 해야 돼요. 현금카드하고 통장을 같이 제출한 다음에, 비밀번호까지 제출한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다른 계좌로 (월급의) 40-50% 되는 것만

입금해 주는 거예요.”

연합회 측이 관리해 온 김 씨 급여 계좌에는 매달 평균 60여만 원이 입금됐지만, 김 씨가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30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연합회 측이 매달 김 씨 월급의 절반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뺐 것입니다.

▷김미정(가명)(방과후학교 강사) : “아이들이 예쁘고 내가 소신 있게 하려고 하지만 또 월급 날짜 돼서 월급 들어오는 거 보면 내가 너무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하고 소신 있게 했던 부분들이 너무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해당 학교 측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강사를 채용했을 뿐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서울 00초등학교 교장 : “무조건 그건 착취 아닌가요? 강사 개인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일대일로. 그거죠 뭐.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야 모르죠. (강사들이) 취직을 하기 위해선 처음에 그런 거 숨기겠죠.”

해당 연합회의 서울 모 지역 지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김 씨가 계약을 맺었던 이 지회에는 40여 명의 방과후학교 강사가 소속돼 있습니다. 지회장은 퇴직 교장 출신, 강사들에게 너무 많은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00연합회 서울 00지회장 : “리플렛(광고 전단)도 만들어야 하고 그걸 인쇄해서 학교에도 갖다 줘야 하고 이런 제반 경비들이 회사 입장에선 그런 돈이 쉽지가 않아요. 정년하고 나와서 연금 타먹고 있는 사람이 돈이 아쉬워서 하는 일도 아닌거고...”

지회 측은 강사들과 별도의 계약을 맺고, 강사들의 급여 통장을 직접 관리해 온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강사들의 수수료 미납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취재파일은 연합회 산하 지회와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맺은 계약서 원본을 입수했습니다. 강사는 연합회가 추천한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독립할 수 없으며, 위약시 연합회의 추천으로 채용된 학교 전부를 출강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지회의 계약서 방과후학교 강사료와 재료비를 연합회가 관리하며, 강사는 강사료 입금 통장의 금액을 연합회의 허락없이 인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은 사실상 노예 계약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소연합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방과후 강사’는 봉?” 정정보도문(또는 “‘방과후 강사’는 봉?” 관련, 바로잡습니다)
2. 내용 : 본 방송은 지난 12월 6일 취재파일 4321 프로그램에서 “사단법인한국방과후교육연합회가 방과후학교의 중간강사알선 명목으로 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위 단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비영리법인임이 확인돼 해당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방과후교육연합회, “강사 송출목적 업체 아니다”

나. 내 용 : 지난 12월 6일 방송한<취재파일 4321>의 「‘방과후 강사’는 봉?’ 보도와 관련하여 사단법인 한국 방과후교육연합회는, 자신들은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을 위해 설립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단체로 강사만 알선하는 송출업체와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2. 피신청인은 2009년 12월 30일까지 KBS-1TV의 <KBS 뉴스> 프로그램에 위 보도문을 방송하되, 제목을 화면 하단부에 자막으로 게시하고 내용은 프로그램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도록 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항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기자에게 금전배상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KBS-1TV : 「930뉴스」 프로그램 『강사 송출 목적 업체 아니다』 제하의 보도 (2009년 12월 30일 9시 30분)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철도공사 파업유도설 의혹 보도 관련 조정신청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900

청 구 명 :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신 청 인 : 한국철도공사

사 장 허 준 영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29.

처리결과 : 조정성립

한국철도공사는 경향신문이 철도공사가 노조에 교섭재개를 제안했다가 철회하는 과정에 철도공사 고위관계자가 공사가 자체적으로 교섭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청와대가 관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하자, 이는 잘못된 보도라며 정정, 반론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한국철도공사는 피신청인 신문사가 공사 측에 의견도 묻지 않고, 노동조합 간부의 언급만을 인용하여 기사를 작성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 공사로서의 이미지가 훼손되었다며 정정, 반론 및 손해배상을 주장했다.

신청인은 정정을, 피신청인 언론사는 반론보도를 주장하였으나, 담당 중재부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통하여 피신청인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게재할 것을 결정하였다.

보도내용

중앙일보 : 『철도 노사 교섭재개 청와대가 제동 걸어』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7일자)

내 용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파업 중인 노조에 ‘파업철회-교섭재개’를 제안했다가 청와대가 제동을 걸어 철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철도공사의 파업유도 의혹(경향신문 12월 16일자 1·3면)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고 민주노총도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16일 “지도부가 수배되고 경찰의 노조사무실 압수수색이 있었던 지난 1일 밤 10시 50분쯤 철도공사 고위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파업 철회와 동시에 교섭을 재개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그러나 다음날 이 관계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 ‘공사가 자체적으로 교섭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관리하는 상황이다. 내 역할은 여기서 끝난 것 같다’며 제안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사측이 제안을 취소한 지난 2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철도공사의 파업 상황실을 방문,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날이다.

경향신문은 공사 측 해당 관계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질문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날 철도공사의 파업 유도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정세균·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국회에서 임시국회 및 현안 대응을 위한 회담을 하고 “철도노조의 파업 유도 문건이 공개된 것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양당 대변인이 말했다.

민주당 이상호 대변인은 “당내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 대표는 “철도노조뿐 아니라 전교조·공무원노조 등 노동운동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탄압이 도를 넘었다”며 공동 대응키로 했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여의도 천막농성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철도공사가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가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며 “파업유도 사실이 밝혀진 만큼 허준영 사장을 구속하는 등 철도공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현 정부가 친기업·반노동 ‘정서’에 그치지 않고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치밀한 기획을 진행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사건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철도 노사 교섭재개 청와대가 제동 걸어” 바로 잡습니다.
2. 내용 : 본 신문은 2009년 12월 17일자 종합면(1면)에 [철도 노사 교섭재개 청와대가 제동 걸어]라는 제목과 [노조 “사측, 제안 하루만에 철회”...민주, 민노당 국정조사 추진]이라는 부제로, 「“지난 1일 밤 10시 50분쯤 철도공사 고위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파업 철회와 동시에 교섭을 재개하자’는 제안을 했

다”며 “그러나 다음날 이 관계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 ‘공사가 자체적으로 교섭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관리하는 상황이다. 내 역할은 여기서 끝난 것 같다’며 제안을 취소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사실은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에 돌입한 이후 노조 집행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교섭재개를 요청해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12월 1일 한국철도공사의 노사관련 담당업무 책임자가 노조 집행부의 한 간부와 통화를 하였고, 통화의 내용은 “파업을 철회하는 시점에 대화를 하자”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이며, 당시 철도노조 측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또한 지난 2일 노조 집행부의 다른 간부와 통화하여 같은 내용을 전달했으나 더 이상의 답변이 없어 “그렇다면 그만 얘기하자”라고 말하며 종료한 것으로서, 철도노조 간부와의 대화에서 청와대를 거론한 발언을 하였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1. 제 목 : “철도 노사 교섭재개 청와대가 제동 걸어” 관련 반론보도문

2. 내 용 : 본 신문은 2009년 12월 17일자 종합면(1면)에 [철도 노사 교섭재개 청와대가 제동 걸어]라는 제목과 [노조 “시측, 제안 하루만에 철회”...민주, 민노당 국정조사 추진]이라는 부제로, 「“지난 12월 1일 밤 10시 50분쯤 철도공사 고위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파업 철회와 동시에 교섭을 재개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그러나 다음날 이 관계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 ‘공사가 자체적으로 교섭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관리하는 상황이다. 내 역할은 여기서 끝난 것 같다’며 제안을 취소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 측이 밝히는 바는, 사실은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에 돌입한 이후 노조 집행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교섭재개를 요청해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1일 노사관련 담당업무 책임자가 노조 집행부의 한 간부와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인데, 노사관련 업무 책임자가 통화한 내용은 “파업을 철회하는 시점에 대화를 하자”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이며, 당시 철도노조 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또한 지난 2일 노조 집행부의 다른 간부와 통화하여 같은 내용을 전달했으나 더 이상의 답변이 없어 “그렇다면 그만 얘기하자”라고 말하며 종료한 것으로서, 철도노조 간부와의 대화에서 청와대를 거론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합니다.

나아가 한국철도공사 측은 철도공사의 노무담당 고위관계자가 노조 집행부 간부와 통화를 하면서 청와대를 거론할 정도로 상식이 없는 바보인지 되묻고 싶다고 하면서, 경향신문의 보도는 철도노조 간부 두 사람의 말을 짜깁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 건 : 2009서울조정900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동 293-74

대표자 사장 허준영

조정대리인 법무팀장 변호사 고○○

피신청인 : (주)경향신문사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송영승

조정대리인 사회부 차장 이기수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향신문> 2면에 게재(토요일자 발행신문 제외)하되, 제목은 경향신문의 통상적인 '바로잡습니다' 활자체 및 크기로 하고, 내용은 통상적인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1.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한 반론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보도문

• 제목 : 바로잡습니다

• 내용 : 지난해 12월 17일 1면 '철도노사 교섭개개 청와대가 제동 걸어' 기사와 관련, 한국철도공사 노무관계자가 노조 간부와의 통화에서 청와대를 특정해 언급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철도공사는 공사 측이 파업 대책을 주도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조정결정 이행결과

경향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보도 (2010년 2월 9일자)

내 용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참조>

여성 산악인 오은선 씨 ‘칸첸중가’ 등반 의혹 보도 관련 조정신청 (반론보도 - 취하)

사건번호 : 2010서울조정60

청구명 : 정정청구

신청인 : 오 은 선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

중재부 : 서울제5중재부

접수일 : 2010. 1. 7.

처리결과 : 취하

여성 산악인 오은선 씨는 자신의 히말라야 칸첸중가 등정과 관련해 의혹제기 기사를 게재한 한겨레신문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한겨레신문은 오 씨가 공개한 ‘정상 사진’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에서 사진의 배경이 정상이라는 증거가 없고, 정상 정복 시간이 다른 산악인들의 경우보다 짧았다는 산악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 보도했다.

오 씨는 당시 정상은 심한 화이트 아웃 상태여서 정상 주위의 바위를 배경으로 촬영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등반가의 안전을 위해 정상 부근의 촬영도 인정되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했다.

피신청인 언론사는 기사가 칸첸중가 등정에 실패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신청인의 입장을 게재하기로 동의했다. 신청인은 반론보도가 나간 뒤 조정신청을 취하였다.

보도내용

한겨레 : 『오은선 씨 히말라야 등정 성공 의혹제기, 칸첸중가만 아는 진실』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4일자)

내용 : 여성 최초로 해발 8000m 이상 ‘히말라야 14좌’ 완동에 도전하고 있는 산악인 오은선(43)씨가 앞서 등정에 성공했다고 밝힌 13좌 가운데 한 봉우리는 정상에 오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국내외 산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 히말라야 고산을 올랐던 산악인들은 23일, 오 씨가 히말라야 칸첸중가 정상에 올랐음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칸첸중가는 해발 8586m로 세계에서 셋째로 높은 산인데, 오 씨는 지난 5월 6일 이산 정상에 올랐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혹의 출발점은 오 씨가 공개한 ‘정상 사진’ (사진)이다. 이 사진으로 이곳이 칸첸중가 정상인지 알 수 없다. 남선우 한국등산연구소장은 일반론임을 전제로 “객관적으로 정상임이 인정되는 사진을 찍는 것은 정상 등정 행위의 필요충분조건”이라며 “통상 정상에서 보이는 다른 고봉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이전에 올랐던 다른 산악인이 꽂아 놓은 깃발 등 인공 흔적을 찍어 정상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칸첸중가의 경우, 보통 정상에서 서쪽에 있는 알룡캉 봉우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다고 한다.

기상악화로 시야가 극히 불투명해도 정상 등정의 기록을 남길 수 있다고 산악인들은 전했다. 8000m급 봉우리를 여러 번 올랐던 산악 잡지 <사람과 산>의 박기성 전 편집장은 “날씨가 좋지 않아 배경이 안 보이면 이전에 정상을 밟은 이들이 남겨 놓은 깃발, 또는 본인의 고도시계에 나타난 고도를 찍어도 된다”고 말했다. 자동 고도가 기록되는 지피에스(GPS)를 휴대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상 사진이 없을 때는 등정 당시의 여러 정황을 근거로 판단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오 씨의 등반 과정이 이전의 등정자들과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칸첸중가에 오르기 전, 오 씨는 오 씨를 촬영하던 한 방송사의 카메라에 해발 8000m 지점에서 마지막 모습이 촬영됐다. 이때가 당일 오후 2~3시쯤이었다. 곧이어 산 뒤편으로 사라진 오 씨는 오후 5시40분 “베이스, 베이스. 정상에 섰습니다”라고 무전으로 알려왔다. 정상까지 최대 3시간 40분이 걸린 셈이다. 오씨는 당시 산소통을 메지 않고 ‘무산소 등정’을 했다고 밝혔다.

두 지점 사이는 거대한 암벽이 버티고 있는 난코스로, 산악인 박영석 씨는 1999년 산소통을 메고도 이 구간을 5시간 걸려 통과했다. 오 씨보다 며칠 뒤 이 봉우리에 오른 세계적 여성 산악인 에두르네 파사반은 오 씨와 같은 무산소 등정으로 10시간이 걸려 정상에 올랐다. 2000년 칸첸중가에 오른 엄홍길 씨는 “등반은 해마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전 상황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칸첸중가 등반 경험이 있는 여러 산악인들은 “등반 기록을 볼 때, 오씨는 마지막 전진캠프인 ‘캠프4’에서 출발해 마지막 망원 관찰 지점(해발 8000m)까지 가는 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미뤄 많이 지쳐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거기서 정상까지 남들보다 더 짧은 시간이 걸렸다고 하니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혹이 이는 ‘정상 사진’과 관련해 오은선 씨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날 날씨가 흐려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며 “앞서 가던 세르파가 ‘여기가 정상’이라고 말해, 지쳐 있던 나는 ‘그냥 여기서 사진을 찍자’면서 정상보다 5m 아래, 10m보다는 위 지점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다.

오 씨의 소속사인 블랙야크 관계자는 “네팔 정부가 발급한 등정증이 올라갔다는 증거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우리 쪽 기록에는 8000m 지점에 도착한 것이 오후 2시로, 정상까지 가는 데 3시간 40분이 걸렸다”며 “다음달 3일 공식 보고회를 열어 칸첸중가 등 올해에 오른 4좌 등정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오은선 씨 히말라야 등정 성공 의혹제기, 칸첸중가만 아는 진실’ 관련 정정보도문
2. 내용: 본 신문은 지난 11월 24일자 사회면에 “오은선 씨 히말라야 등정 성공 의혹제기, 칸첸중가만 아는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산악인 오은선 씨의 칸첸중가 등정 성공에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오은선 씨가 여성 산악인으로서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미터 13좌 등정에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에 바로잡습니다.

신청후 보도문

1. 제목: “칸첸중가 등정에 성공했다”
2. 내용: <한겨레>는 지난해 11월24일 10면 ‘칸첸중가만 아는 진실’이라는 기사를 통해 오은선 본인

의 칸첸중가 등정 성공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 기사에선 의혹의 근거로 마지막 관찰지점인 해발 8000m에서 정상까지 너무 적은 시간이 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지점은 해발 8400m의 ‘손톱바위’ 부근으로, 여기서 정상(8586m)까지 약 3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정상 사진도, 당시 심한 화이트아웃으로 몇 미터 앞도 볼 수 없는 상태였기에 정상 주위의 바위를 배경으로 촬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이트아웃 상황에서는 등반가의 안전을 위해 정상 부근의 촬영도 인정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본인의 등정 당시 정황을 들어 의혹을 제기한 박아무개 씨는 1999년 칸첸중가에 오른 사람으로, 히말라야는 매년, 매일, 매시간 변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전 기억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한겨레는 또 12월 4일 10면 ‘의혹만 키운 기자회견’이라는 기사에서 정상에는 산소통이 없었다는 본인의 말에 대해, 5월 18일 칸첸중가를 올랐던 김아무개 씨의 정상 사진에는 산소통 두 개가 놓여 있었다며 또다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확인 결과, 정상의 산소통은 본인이 정상에 오르기 직전에 등정한 인도팀과, 본인 직후 그리고 김아무개 씨보다 한 시간 앞서 등정한 노르웨이팀도 “정상에서는 산소통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일부 산악인에 의해 제기된 본인의 등정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외국 산악계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할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정상 등정기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